

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審 查 報 告 書

總 務 社 會 委 員 會

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審 查 報 告 書

1995年 3月
總務社會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2月11日
- 나. 提 出 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2月 13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3月 14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5年 3月 14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保健所長 崔圭采)

가. 提案 事由

- 의료법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7조로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,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, 의료기관(병원급미만) 개설허가 수수료징수에 명확을 기하고자 함.

나. 主要 骨子

-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 "별첨1"의 제증명등 수수료중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등란의 제6호 보건사회 관계란중 제(1)목 의원, 부속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 개설신고(허가) 신청시 종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고
- 제(2)목 의원, 부속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 개설 장소이전 및 신고(허가) 신청시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 제(3)목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: 趙澤龍)

-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 신고 및 장소변경 신고시 수수료 징수를 하여 왔으나 1994년 9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되고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
-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료기관에 홍보를 거친 적법 절차에 의한 조례 개정안 임으로 심사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 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생 략

8. 其他 事項 : 없 음